
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67호>에 따라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지정과 관련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산정시 일정거래를 제외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

1. 계산방법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 제67호> 제2-1조 2호, 제3-1조 및 제4-1조에 의하여 계산

2. 집합투자기구명 : 신한에쿼티알파일반사모혼합자산

3.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산정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(2022.11.17기준)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1) 파생상품종류 | - |
| 2) 종목명 | - |
| 3) 포지션 | - |
| 4) 파생상품 위험평가액* | 0 |
| 5) NAV | 20,886,884,579 |
| 6) 파생위험평가액/NAV** | 0% |

4. 기타 : 매매없음

* 이 공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파생상품관련이며, 자본시장법 및 집합투자규약등에서 제한하는 파생상품 위험평가액과는 다를수 있음(별표**참조)
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<별지제 67호> 제3-1조에 따라 위험평가액 산정에서 제외(공시대상 아님)되는 파생상품(현물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 스왑거래) 거래 발생후 보유지속

** 현재, 자본시장법 및 집합투자규약 관련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비율은 약 0.00%입니다.